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86
----------	-------

발의연월일 : 2026. 2. 19.

발 의 자 : 신장식 · 서왕진 · 이해민
정춘생 · 김선민 · 황운하
강경숙 · 조인철 · 고민정
백선희 · 차규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인권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인권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법률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까지의”를 “제22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조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 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 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 ----- ----- ----- ----- -----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각종 학교, 「공직자윤리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 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u>제22조까지</u> 의 규정에서 보장 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1. ----- ----- ----- ----- ----- ----- ----- ----- ----- ----- ----- <u>제22조까지</u> <u>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u> 의-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